

주·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부터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(과태료),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·수취인 미거주(부재)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1.제 목 : 주·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
- 2.근거법규 : 「질서위반 행위 규제법」 제16조, 제17조
- 3.공고(의견진술)기간 : 2019. 9. 2. ~ 2019. 9. 19.
- 4.공시송달대상자 : 불임 ‘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현황’ 참조
- 5.공고사항 :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FAX(053-661-3029)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,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(*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금액의 20% 감경).
- 6.문 의 처 :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(☎053-661-3021~8). 끝.

2019. 9. 2.

대구광역시 중구청장

